

국제협정과 협상을 통한 중국 건설서비스 시장개방과 기업의 활용방안**

양준석*

가톨릭대학교 법정책학부 경제학과

Opening China's Construction Markets through International Agreements and Negotiations and Applications for Firms

Junsok Yang*

*Department of Economics, The Catholic University of Korea

Abstract : This paper examines the extent of China's market liberalization in the construction market seen through the point of view of WTO agreements and Korea-China FTA. Since the environment set by these agreements form the institutional background that Korean firms must work with to successfully access the market, the Korean government must work to reduce Chinese barriers as much as possible through international negotiations on these agreements. The paper sets out three goals for negotiations and the appropriate agreements and fora the government can use to advance these goals.

Keywords : China construction market, WTO, FTA

1. 서론

중국의 건설시장 규모는 2014년 기준으로 2.5조 달러로 추정되고 있으며, GDP의 6.9%를 차지하고 있는 바, 세계에서 가장 큰 규모의 건설시장 중 하나로 추정되고 있다. 또한 중국의 현재 개발단계를 본다면 중장기적으로 볼 때 중국의 건설시장은 더욱 성장할 가능성이 크다. 특히 중국이 성장하는 과정에서 더욱 많은 인프라 시설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는 한국 건설업체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에는 좋은 시장 진출 기회가 될 수 있다.

중국은 WTO에 가입하면서 국내 민간건설시장을 일부 개방하였지만, 대부분 프로젝트에 대해서는 외국업체와 국내 업체간의 합작만 허용하고, 외국업체에 불리한 법과 규제체제를 유지하며 불투명한 절차를 사용하므로 아직 많은 시장장벽이 남아있다. 또한, 중국은 정부조달 건설서비스 시장

을 아직 개방하지 않았는데 중국이 아직 정부의 역할이 큰 공산주의 국가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정부가 조달하는 건설서비스가 여타 국가들보다 상당히 클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정부의 공식발표에 의하면 중국의 정부조달 시장규모는 약 7000억 위안(GDP의 2%)이지만, 이 숫자는 중국의 정부조달법의 적용을 받는 조달의 규모이며 정부의 목적으로 공기업이나 기타 기관들이 구매하는 물품과 서비스 및 건설서비스를 포함하면 정부조달의 규모는 이보다 훨씬 클 것으로 예상된다. OECD 국가들의 사례를 보면, 정부조달은 GDP의 12%~20%가 되는데, 이 규모로 추정하면 중국의 정부조달 시장규모는 4조 위안 - 6.8조 위안으로 추정된다¹⁾. 이 통계는 건설서비스뿐만 아니라 물품과 여타 서비스도 포함되어 있는데 이 금액 중 상당히 큰 부분은 건설서비스일 것으로 추정된다²⁾. 이러한 중국의 시장규모를 보면 중국 건설시장은 한국 등 외국업체들이 진출을 시도할 수 있는 엄청나게 큰 시장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한국정부는 한국 건설업체들이 중국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중국의 시장장벽을 제거하거나 최대한 완화시켜 주어야 한다. Lee et al.(2007)이나 Park et al.(2008)은 기업

* Corresponding author: Junsok Yang, Department of Economics, The Catholic University of Korea, 43-1 Yeokgok 2-dong, Wonmi-gu, Bucheon, Kyunggi-do KOREA 420-743.
E-mail: yanjuna@catholic.ac.kr
Received: October 2, 2015; revised October 27, 2015
accepted October 30, 2015

** 본 연구는 한국건설경제산업협회가 국토교통부를 위해서 진행한 「중국건설시장 진출전략 연구」의 일부 내용을 발췌하고 발전시킨 것임.

1) European Chamber of Commerce (2011) pp.16-17

2) 아쉽게도 건설서비스만 계산한 통계는 아직 구할 수 없다.

의 입장에서 해외 시장진출을 검토하였지만, 이 글에서는 정부가 해야 할 과제를 정리하고자 한다. 궁극적으로 해외시장 진출은 기업이 해야 하는 과제이지만, 정부는 기업이 자기의 여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국내외적 제도적 배경을 마련해 줄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본 글은 한국이 WTO와 FTA 등의 국제협정을 통하여 중국의 시장장벽을 제거하거나 완화할 때 사용할 수 있는 전략을 제시하고자 한다.

아래에서 2장은 WTO 협정이나 한·중FTA를 통하여 중국이 얼마나 한국에게 자국 건설시장을 개방하였는지를 살펴본다. 3장은 이러한 시장개방에도 불구하고 아직 남아있는 시장장벽을 간단히 살펴보고, 4장에서는 한국정부가 이러한 시장장벽을 제거하거나 완화하기 위해서 국제협상에서 사용할 수 있는 전략을 제시한다.

2. 중국 건설시장 개방현황

중국의 GATS(General Agreement on Trade in Services)

협정 양허를 보면 중국은 건설서비스를 제한적으로 개방하고 있다. 중국은 CPC 분류³⁾기준으로 건설서비스 분류인 511-518을 모두 양허하고 있지만, 실제 시장개방수준은 상당히 제한적이다. Table 1은 GATS협정에서 중국의 시장개방 양허사항을 정리하고 있다. 그런데, GATS 협정에서는 정부 조달을 제외하고 있어 중앙정부나 지방정부, 공기업이나 기타 정부기관이 수주하는 건설 프로젝트는 시장개방되지 않고 있다. WTO는 정부조달 시장개방을 정부조달협정(GPA: Government Procurement Agreement)에서 따로 다루고 있는데, 중국은 WTO 가입시 GPA에도 가입하기로 약속하였고, 현재 가입을 위해 여타 GPA 회원국들과 가입협상을 하고 있는 상태이다.

Table 1에서 모드1은 국경간공급⁴⁾을 의미하는데, 일반적으로 건설서비스의 모드1 거래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시장개방의 의미가 없다. 중국은 모드2(해외소비⁵⁾)형태의 건설서비스에 대해서 시장을 제한 없이 개방하고 있는데, 모드2란 중국 소비자가 외국(공급자의 국가)으로 가서 서비스를 소비하는

Table 1. China's GATS Concession (Construction Services and Related Services)

Industrial Sector (CPC Provisional Code)	Limitations on Market Access	Limitations on National Treatment
511: Pre-erection work at construction sites 512: Construction work for buildings 513: Construction work for civil engineering (Including dredging services relating to infrastructure construction) 514: Assembly and erection of prefabricated buildings 515: Special trade construction work 516: Installation work 517: Building completion and finishing work 518: Renting services related to equipment for construction or demolition of buildings or civil engineering works with operator (Coverage of CPC 518 is limited only to the rental and leasing services of construction and/or demolition machines with operator which are owned and used by foreign construction enterprises in their supply of services)	Mode 1) Unbound	Mode 1) Unbound
	Mode 2) None	Mode 2) None
	Mode 3) Wholly foreign-owned enterprises will be permitted. Wholly foreign-owned enterprises can only undertake the following four types of construction projects. 1. Construction projects wholly financed by foreign investment and/or grants. 2. Construction projects financed by loans of international financial institutions and awarded through international tendering according to the terms of loans. 3. Chinese-foreign jointly constructed projects with foreign investment equal to or more than 50 per cent; and Chinese-foreign jointly constructed projects with foreign investment less than 50 per cent but technically difficult to be implemented by Chinese construction enterprises alone. 4. Chinese invested construction projects which are difficult to be implemented by Chinese construction enterprises alone can be jointly undertaken by Chinese and foreign construction enterprises with the approval of provincial government	Mode 3) Within three years after China's accession to the WTO, none.
	Mode 4) Unbound except as indicated in horizontal commitments	Mode 4) Unbound except as indicated in horizontal commitments
8671: Architectural Services 8672: Engineering Services 8673: Integrated Engineering Services 8674: Urban Planning Services (except General Urban Planning)	Mode 1) None for scheme design. Co-operation with Chinese professional organisations is required except scheme design.	Mode 1) None
	Mode 2) None	Mode 2) None
	Mode 3) Within five years after China's accession to the WTO, wholly foreign-owned enterprises will be permitted.	Mode 3) Foreign service suppliers shall be registered architects/engineers, or enterprises engaged in architectural/engineering/urban planning services, in their home country.
	Mode 4) Unbound except as indicated in horizontal commitments	Mode 4) Unbound except as indicated in horizontal commitments

※ Source: WTO (2002)

3) 현재 CPC 분류는 2번 개정되었지만, WTO 협상에서 산업을 분류할 때에는 구식인 CPC Provisional 분류기준을 사용하고 있다.

4) 서비스 공급자(수출자) 및 서비스 소비자(수입자)가 각각 자기 나라에 머물면서 internet, fax를 통해 서비스만 국경을 넘어 공급하는 방식
5) 서비스 소비자(수입자)가 서비스 공급자(수출자)가 머무르고 있는 국가로 이동(여행이나 출장)하여 서비스를 제공받는 방식

형태의 서비스 무역을 의미하므로 모드2 형태로 건설서비스를 공급하기는 상당히 어려울 것이고, 따라서 시장개방의 의미가 미미하다.

대부분 건설서비스 수출은 모드3(상업적 주재⁶⁾), 즉 현지에서 지사나 법인을 설립하고, 그 지사나 법인을 통해서 공급하는 형태로 이루어지는데, 중국내에서 기술이 부족한 경우나 국제기구의 용자 또는 외국인투자로 이루어지는 프로젝트에만 외국업체들의 자유로운 참여를 허용하고, 기타 경우에는 국내기업과의 합작을 의무화하므로 해외업체의 독자적인 시장 진출은 상당히 어렵다. 특히 중국은 아직 공산주의 국가인 만큼, 상당히 많은 건설 프로젝트가 중앙정부, 지방정부, 공기업 등을 통해서 이루어지는데, 중국이 GPA에 가입하지 않았고, FTA에서도 정부조달을 개방하지 않았으므로 중국 건설시장 진출에 더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중국은 건설서비스에서 모드4(자연인의 이동⁷⁾)를 통한 무역을 개방하지 않고 조건부로 일부 자연인의 이동만 허용하고 있다. 따라서 건설서비스 및 대다수의 서비스에서는 중국 지사나 한국업체가 투자한 법인에서 일하는 관리자, 감독자와 전문가의 입국만 허용하고 있다.

건설서비스와 관련된 일반 서비스인 건축가 서비스, 엔지니어링 서비스, 통합엔지니어링 서비스와 도시계획 서비스⁸⁾에 대해서도 중국은 모드1에 있어서는 계획설계를 제외하고 합작을 요구하고 있고, 모드2는 개방하지 않고 있으며 모드3에 대해서는 개방 후 5년간은 합작을 요구하였지만, 그 후 이 제한을 철폐하였다. 중국은 이러한 서비스를 중국내 모드3를 통해서 제공하는 경우, 서비스 제공자가 공급체의 모국에서 등록된 전문가, 또는 이러한 일을 하는 회사에서 일을 하고 있을 것을 요구하고 있다. 모드4에 있어서는 계약 서비스 공급자는 중국에 입국할 수 있다⁹⁾. 한국과 중국의 건축가 서비스, 엔지니어링 서비스, 통합엔지니어링 서비스와 도시계획 서비스의 개방수준을 비교한다면 한국은 건축가 서비스 모드1에서 합작을 요구하지 않지만, 여타 모드에서 중국과 한국의 GATS 개방 수준은 유사하다.

한·중FTA에서도 건설서비스에 있어서 GATS 협정 수준을 넘는 추가적 시장개방은 별로 없었다. 건설서비스에 있어서 중국이 한국에 GATS 협정 이상으로 개방한 부문으로는 상해 자유무역지역에 설립된 한국 서비스 공급업체에 한해서는 상해에서 중국과 외국업체간 합작, 진행되는 사업에는 외

국인 투자 소유에 대한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건설서비스, 또는 건설관련 서비스 공급업체의 자격심사에서 중국에 설립한 한국 서비스 공급업체들의 자격을 평가할 때, 중국내외의 계약실적을 고려할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한·중FTA에서 건설관련 서비스(건축가, 엔지니어링, 통합엔지니어링, 도시계획)의 개방수준도 GATS협정의 개방수준과 같다. 단, 중국에 설립한 한국 서비스 공급업체들의 자격을 평가할 때, 중국내외의 계약실적을 고려할 것이라는 구절이 한·중FTA에 추가로 명시되어 있다. 그러나 중국이 이러한 조건을 중국에 설립한 한국업체 지사에 한정되어 해석할 것인지, 지사의 모사까지 포함되어 해석될 것인지에 대하여 애매한 점이 남아있다.

반면, GATS협정과 한·중FTA에서 한국과 중국의 상호 시장개방수준을 비교하면, 한국도 GATS나 한미FTA 등에서 한국에 지사나 대표가 없는 업체는 건설서비스에 참여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¹⁰⁾. 실질적으로 모드3을 통한 시장진출만 허용하는 것이다. 단 한국은 건설서비스 모드3를 완전히 개방한 반면, 중국은 모드3에 있어서 일부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면 합작을 요구하는 조건을 유지하고 있다는 점이 가장 큰 차이이다. 그리고 두 국가는 모두 모드4를 통한 노동자의 이동을 개방하지 않고 있으므로 회사의 임원이나 일부 전문가들을 제외하고는 자국의 숙련노동자나 미숙련노동자를 상대국 시장의 작업에 투입할 수 없다.

WTO GATS 시장개방에서 주의를 할 것은 특별히 양허하지 않은 경우, 회원국은 외국기업과 국내기업에게 동등하게 내국민대우를 해야 한다는 것이다. 즉, 협정상으로는 시장을 개방하였다고 하여도, 중국에 진출한 외국기업은 중국기업과 동등한 대우 및 규제를 받고, 중국기업이 충족해야 하는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일부 법이나 규제가 외국업체에 불리하게 적용한다고 하여도, 국내기업들도 준수해야 한다는 법이나 규제이면 외국업체도 여기에 준수해야 하며, 이는 외국업체의 중국진출을 어렵게 하는 경우가 있다. 이의 대표적인 사례로는 1급 건설업체의 자격을 유지하기 위해 중국정부가 기업들에게 일정 숫자 이상의 엔지니어나 전문가를 요구하는 규정을 들 수 있다. 중국업체의 경우, 많은 작업을 수행하기 때문에 충분한 숫자의 엔지니어들을 고용할 수 있지만, 새롭게 진출하여 아직 작업 숫자가 많지 않은 외국업체는 정부가 요구하는 숫자의 엔지니어들을 유지하기가 어렵다. 그러나 이렇게 외국업체들에게 차별적인 법이나 규제를 WTO GATS 차원에서 다루기는 어렵다. 피해를 받은 기업과 국가가 이러한 법과 규제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법이나 규제의 주 목적이 오직 외국업체들에 대한 차별적 대우이며, 공공적 필요성이 취약하다는 점을 WTO의 분쟁해결절차를

6) 서비스 공급자(=수출자)가 있는 국가에서 서비스 소비자(=수입자)가 있는 국가로 자본이 이동(=외국인투자)하여 외국인투자 기업(지점, 사무소 포함)이 주재하면서 서비스를 제공 하는 방식

7) 서비스 공급자(=수출자)가 서비스 소비자(=수입자)가 있는 국가로 이동(출장)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

8) 단, 일반 도시건설 서비스 제외

9) 한·중 FTA 11장 참조

10) 한·중 FTA Annex I Schedule of Korea

통하여 입증해야 하기 때문이다.

WTO GATS 협정의 또 다른 문제는 앞에서 언급한 것과 같이 정부가 정부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해서 수주하는 건설 서비스 정부조달은 시장개방 대상으로부터 제외된다는 점이다¹¹⁾. 여기서 정부란 중앙정부나 지방정부, 그리고 정부의 목적을 수행하는 공기업의 의미를 지닌다. 중국의 중앙정부나 지방 정부의 구매조달은 정부조달법의 적용을 받으며 여기에는 국산품에 혜택을 주게 되어있다. 정부기관 관련 건설물의 건설은 정부조달법의 적용을 받게 되어있지만, 인프라 시설 건설은 정부조달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중국에서 인프라 시설 건설이나 공기업의 구매조달은 입찰법의 적용을 받는데, 여기서는 국산품 혜택의 정도는 수주하는 기관에 맡기고 있으며, 입찰과정에서 문제가 생겨도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절차를 의무화하지 않으므로 외국업체에게 역시 불리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¹²⁾.

정부조달 시장을 개방하기 위해서는 WTO 차원에서는 정부조달협정(GPA)을 운영하고 있으며, 일부 FTA에서도 체결 국간 정부조달 시장개방을 다루고 있다. 그러나 WTO GPA는 모든 WTO 회원국들이 참여하는 다자간 협정이 아니라 오직 일부 회원국들만이 참여하는 복수간 협정이며, 중국은 아직 GPA에 가입하지 않고 있다. 중국은 WTO 가입의 조건으로 GPA 가입협상을 시작하도록 약속하였고, 2007년부터 여타 GPA 가입국들과 가입협상을 진행하고 있지만, 그 진전은 매우 느리다. 그 이유는 중국이 너무 소극적인 양허안을 제출하고 있어 여타 GPA 가입국들의 승인을 받지 못한다고 전해지고 있다¹³⁾. 신문보도에 의하면 여기서 특히 문제되는 부분은 중국이 지방정부의 구매조달을 개방대상에 포함시키지 않았으며, 오직 3개의 시와 2개의 도(province)의 공기업만을 시장개방 대상으로 포함시켰다는 점이다.

정부조달 건설서비스 시장개방과 관련 또 하나 유의할 분야는 Build-Operate-Transfer (BOT) 계약, 또는 민관협력 건설시장의 개방이다. 2014년 이전까지는 GPA나 GATS에서 정부와 민간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BOT 계약은 시장개방 대상으로부터 제외되었다. 그러나 2014년 GPA 개정 이후 일 BOT계약과 공공사업실시계약(public works concession)도 개방을 가능하도록 하였다. 따라서 가입국이 원하는 경우, BOT 계약이나 공공사업실시계약 등 공공 프로젝트를 민간업체가 추진하는 민관협력 건설 프로젝트도 시장개방 대상으로 포함시킬 수 있고, 한국을 포함한 일부 국가들은 서로 개방하겠다고 합의한 가입국들의 일부에게 이러한 민관협력 건설시

장을 상호적으로 개방하고 있다. 중국은 GPA 가입국이 아니기 때문에 민관협력시장을 개방하지 않고 있지만, 중국이 수처리 산업 등 국내 인프라 시설 건설에 대해서 민관협력사업(Private-Public Partnership: PPP)에 더욱 많은 관심을 보이기 시작함¹⁴⁾으로 GPA협상시 PPP도 시장개방 협상대상으로 간주할 수 있다.

WTO를 통하여 정부조달 시장을 개방할 수 없으면 FTA를 통해서 개방하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는데, 한·중 FTA에서 현재로는 정부조달 시장개방에 대한 내용이 FTA에 포함되지 않았다. 중국이 맺은 FTA 중에서 아직 정부조달을 개방한 FTA는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한·중 FTA에서 정부조달 시장개방에 관련된 내용은 FTA의 경제협력 챕터에 포함되었는데, 여기에는 중국이 WTO 정부조달협정(GPA)에 가입한 후, 추후 협상하겠다는 내용만이 포함되어 있다. 따라서 중국과 한국은 서로 정부조달 시장을 개방하지 않고 있으며, 중국이 GPA에 가입을 하거나 한·중FTA에서 정부조달 시장개방에 대한 추가 협상이 이루어지지 않는 한, 한국과 중국은 서로의 정부조달 시장을 개방하지 않은 상태가 될 것이다. 물론, 양국은 자국의 필요성에 따라 개별 프로젝트 차원에서 정부의 프로젝트 중 일부를 외국 업체에 개방할 수 있지만, 개방할 의무는 없다.

단, 중국 정부가 수주하는 프로젝트라도 세계은행이나 아시아개발은행(ADB) 등 국제기구의 용자나 지원을 받는 프로젝트에 대해서는 국내에 지사가 있는 외국 건설업체에게도 입찰을 개방해야 하며, 외국업체들과 국내업체들을 같은 기준으로 심사해야 한다. 대다수의 국제기구는 용자나 지원의 조건으로 이 프로젝트와 관련된 입찰은 투명하고 공평하며 개방적인 방법으로 이루어지도록 의무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국제기구로부터의 용자나 자금을 받아 추진하는 프로젝트는 외국업체들에게 개방해야 하며 GPA와 유사한 입찰 절차를 준수해야 하므로 외국업체 참여하기가 중국의 자체적 프로젝트들보다 훨씬 순조롭다.

국제기구가 주도하는 프로젝트의 중요성을 볼 때 중국이 최근 주도하고 57개의 국가가 참여하기로 한 아시아 인프라 투자은행(Asian Infrastructure Investment Bank: AIIB)은 외국업체들의 중국 시장진출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세계은행이나 ADB는 새천년개발목표(MDG)등으로 갈수록 인프라보다는 사회후생복지 향상에 더욱 많은 중점을 두고 있다. 따라서 AIIB는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인프라 건설의 건설을 지원하기 위한 지역개발은행(Regional Development Bank)으로 세계은행과 ADB와 협력을 하여 지역 인프라 시설에 기여하게 되어있다. AIIB의 기본 규칙은 아직 완료되지 않았지만, 담당자들이 일단 밝힌 바에 의하면

11) GATS 협정 XIII조 1항

12) European Chamber of Commerce (2011) pp. XXX

13) <http://www.fiercegovernment.com/story/china-makes-another-bid-join-wto-procurement-agreement/2014-02-13>

14) 최재호 · 이승호 (2010)

AIB도 세계은행과 Asian Development Bank(ADB) 등 국제 기관들과 유사한 수준의 투명성 규칙과 투명한 절차 및 공정한 입찰조건을 요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비록 중국이 AIB의 주도력을 가지고 있지만, 자국기업들에게 혜택을 주지 않겠다고 강조하고 있으므로 외국기업들이 중국 및 아시아 인프라 시장에 진출하고 프로젝트를 수주할 때 유용한 도구가 될 수 있다고 판단한다.

3. 한국업체들의 중국시장 진출 문제

지금까지의 시장개방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한국업체들은 중국 건설서비스 시장 진출에 어려움을 느끼고 있다. 특히 정부조달 건설서비스에 있어서는 아직 WTO 차원이나 FTA 차원에서 시장개방이 이루어지지 않아 제한된 프로젝트에만 참여할 수 있고, 중국정부가 외국업체의 참여를 허용하는 경우에도 많은 문제점을 겪고 있는데, 광복선(2012)과 최의현과 추초(2008) 등은 다음 문제들을 지적하고 있다.

먼저, 중국이 정부조달이라고 보는 프로젝트들과 여타 국가들이 일반적으로 정부조달이라고 보는 프로젝트에는 정의에 차이가 있다. 중국은 정부조달을 정부기관의 조달이라고 보는 반면, 여타 국가들은 정부조달 또는 공공조달을 “정부행위에 여겨지는 목적으로 구매하는 물품과 서비스”로 보고 있다. 따라서 중국은 발주자 기준으로 공기업이나 일부 정부 관련 기관의 조달은 정부조달로 보지 않는 경향이 있고, 따라서 공기업과 기타 정부기관이 발주하는 프로젝트에 대해서는 외국업체의 참여에 대해서 상당히 소극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다.

또한, 중국은 현재 정부조달 절차를 규정하는 법과 규제, 특히 시행세칙이 아직 완료되지 않아 정부조달과 절차에 관련된 법이 아직 방대하고, 원칙이 부정확하다. 특히 정부조달 관련 부처들이 분산되어 있어 절차에 대한 통제가 어렵다. 입찰방식, 입찰공고 및 응찰시간이 중국 정부나 기업의 편의에 따라 제정되었으므로 외국기업의 참여가 어렵고, 공개입찰이 별로 없다.

중국의 정부조달은 시장개방 대상이 아니므로 자국산 우선 조달정책을 운영하고 있으며, 조달 관련 관리들이 무능한 경우가 많다고 알려지고 있다.

또한, 중국의 정부조달에는 개인간의 관계를 중요시하는 ‘관시’ 관습에 의하여 조달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부정부패가 심하다. 또한 기업(특히 공기업)이 아직도 경영에 대해서 정치성 간섭을 많이 받고 있는 반면, 관독체계가 취약하다.

이러한 문제들 외에도 한국업체들이 지적하는 문제로는 중국이 요구하는 규제적 조건들이 있다. 중국에서 종합건설업체가 특급이나 1급의 자격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일정 숫자의 엔지니어들을 고용해야 하는 조건 등을 사례로 들 수 있는데,

아직 많은 숫자의 프로젝트를 시행하지 못하는 한국업체의 입장에서는 이러한 조건을 충족하기가 어려운 면이 있다.

이러한 문제들 중 일부는 WTO나 FTA 차원의 국제협상을 통해서 제거하거나 완화시킬 수 있다. 이미 한국업체의 실적 인정과 관련, 한·중FTA에서는 한국업체의 경우, 중국 외 지역의 실적도 인정해 주도록 규정하고 있다. 아직 남은 문제들 중에서도 WTO의 GPA나 한·중FTA의 추가 협상, 그리고 중국과 한국이 여타 국가들과 함께 추진하고 있는 메가 지역적 FTA인 RCEP 또는 두 국가가 가입을 고려하고 있는 Trans-Pacific Partnership(TPP) 협상에서 다룰 수 있는 것들이 상당 수 있다. 그러나 협상에 따라 그 특성이 있으므로 이 모든 문제들을 하나의 협상만으로 다룰 수 없고, 전략적으로 특정 문제는 특정 협상에 다루는 맞춤형 협상전략을 따를 필요가 있다. 아래에서는 이러한 각 협상에서 취할 수 있는 구체적인 협상전략을 언급하고자 한다.

4. 구체적 전략

4.1 배경

현재 한국이 중국의 건설서비스 시장개방과 관련 사용할 수 있는 도구로는 다음 국제협상들을 들 수 있다. 먼저, 한국과 중국 등 WTO 회원국들은 도하라운드에서 GATS협상을 통하여 건설서비스 시장개방을 포함한 전반적 서비스 시장개방을 논의하고 있다. 한국은 GATS협상을 통하여 중국의 추가적 건설서비스 시장개방을 추진할 수 있지만, 중국은 WTO 가입시 이미 수준 높게 시장을 개방하였다고 주장하고 있고, 도하라운드는 거의 마비된 상태에 있으므로 유용한 도구로 사용되지는 않을 것 같다.

WTO 차원에서 중국의 정부조달협정(GPA) 가입 협상도 정부조달 건설서비스 시장개방에 있어서는 하나의 도구가 될 수 있다. GPA는 정부조달 시장의 개방 및 정부의 구매조달관련 법과 규제의 투명성, 입찰절차의 투명성 문제를 다루고 있는데, 한국은 이미 GPA에 가입되어 있는 반면, 중국은 가입을 위한 협상을 추진하고 있으므로 한국이 중국에 대해서 시장개방을 요구할 수 있는 유용한 도구가 될 수 있다. 특히 한국은 이미 GPA에 가입하여 정부조달 시장을 개방하고 있으므로 중국에 시장개방을 요구하기에는 좋은 협상위치에 있다.

한·중FTA를 통한 건설서비스 시장개방의 기회는 농친 셈이라고 볼 수 있다. 먼저, 자격심사 과정에 있어서 중국이 한국업체의 해외실적을 인정해 준다는 점은 중요한 결과이지만, 중국의 실질적 시장개방 수준은 대체로 GATS 협정에서 합의한 수준에 유지하고 있으므로 시장개방 차원에서는 한국에 큰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다. 또한 정부조달 시장에 대해서는 협상을 미루고 있으므로 정부조달 건설서비스 시장개방

에 큰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 정부조달 관련 협상이 남아있으므로 역시 협상을 사용할 수 있는 가능성은 남아있다고 볼 수 있다.

한국과 중국은 ASEAN 10개국과 호주, 뉴질랜드, 일본과 인도와 함께 지역적 메가 FTA인 RCEP(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를 추진하고 있다. RCEP협상에서는 건설서비스를 포함한 서비스 시장의 추가 개방이 논의되고 있지만, 정부조달은 포함되지 않을 것으로 알려져 있다¹⁵⁾. RCEP 협상에 참여하는 16개 국가들 중 GPA에 가입한 국가들은 한국과 일본 2개국에 불구한 점을 보면 16개 국가들이 정부조달 시장개방에는 상당히 소극적인 입장을 보일 것이라고 예상되었으나, 정부조달 시장개방의 기회를 놓친 것으로 볼 수 있겠다.

현재 미국을 중심으로 아시아·태평양 12개 국가는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rans-Pacific Partnership: TPP)이 추진하고 있다. 한국과 중국은 TPP에 현재 참여하고 있지 않지만, 한국은 협상이 완료되면 TPP에 가입할 계획을 세우고 있고, 중국도 TPP의 가입을 고려할 수 있다고 발표한 바 있다¹⁶⁾. TPP에는 일반 서비스 시장개방 뿐만이 아니라 정부조달 시장개방 및 규제외의 국제적 수렴을 추진하는 규제수렴(regulatory coherence 또는 regulatory convergence)도 포함되어 있으므로 중국 건설서비스 시장개방을 폭넓게 추진할 수 있다¹⁷⁾.

한국, 중국, 미국 등 아시아·태평양 국가들은 RCEP와 TPP 추진 후 아태지역의 대부분 국가들을 포함하는 대규모 FTA인 아태지역FTA(Free Trade Area of the Asian Pacific: FTAAP)를 추진할 것이라고 발표한 바 있다. 특히 APEC 정상회의에서 APEC 회원국 지도자들은 FTAAP를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밝히고 있다¹⁸⁾. FTAAP에서 어떤 분야들이 포함될지는 아직 확실하지 않지만, TPP와 RCEP에 포함되어 있는 분야들이 포함될 가능성이 크고, 현재 협상되고 있는 다자협정문보다 더욱 깊은 수준의 시장개방과 규제의 수렴이 추진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이 중국의 건설서비스 시장개방을 추진하고자 하면 이러한 협상들을 도구로 사용하여 세 가지 방향으로 협상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

첫째, 시장개방 범위를 넓히도록 한다. 특히 지방정부와 공

기업 및 PPP의 정부조달시장 개방을 추진하도록 한다.

둘째, 건설서비스, 특히 정부조달과 관련된 법과 규제의 투명성 제고와 입찰절차의 투명성 제고를 추진해야 한다. 특히, 지방정부의 입찰절차를 투명화시켜야 한다.

셋째, 외국업체들에게 불리하게 적용되는 규제를 제거시키거나 완화시키도록 한다.

아래에서는 세 방향을 더욱 자세히 살펴본다.

4.2 시장개방범위 확대

GATS와 한·중FTA에서 한국과 중국은 CPC 코드 기준으로 건설서비스 511-518을 양허하고 있지만, 앞에서 언급한 비와 같이 중국은 자국 서비스 시장을 합작회사에만 개방하는 등 제한적으로만 시장을 개방하고 있으며, 정부조달 시장은 개방하지 않고 있다.

또한 중국은 아직 정부주도의 경제이므로 건설시장에서 중앙정부, 지방정부 및 공기업이 시작하는 프로젝트들의 비중이 높다는 점을 고려하면, 중국의 정부조달 시장이 개방되지 않았다는 점은 중국의 건설시장 중 상당히 큰 분야가 아직 개방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중국은 정부의 예산을 절약하고 인프라 시설을 제공하기 위해서 최근 PPP 사업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는데, 아직 BOT 계약과 이에 따르는 시설운영서비스, 그리고 공공사업실시계약 등 민관협력사업도 시장개방 대상으로 포함시킬 수 있다면 중국시장개방과 한국기업의 중국 진출에 큰 기여를 할 수 있다고 평가한다.

중국이 외국업체에게 합작 이외로 민간서비스 시장을 개방시키기 위해서는 GATS협상이나 FTA협상을 사용할 수 있으나, 한·중FTA 협상이 완료되고 GATS협상이 멈추어진 현재 상황을 고려할 때 한국이 사용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두 도구를 사용할 기회를 놓친 셈이다.

아직도 사용할 수 있는 도구로는 RCEP와 TPP협상이 있으나, RCEP 차원에서는 협상국 대부분이 개도국이므로 건설시장의 적극적 개방을 추진하고 싶을지가 미지수이다. 또한 중국이 TPP에 가입할지도 아직 미지수이므로 현재로는 민간 건설서비스 시장개방을 적극적으로 더 이상 추진할 수 있는 길은 막힌 셈이다.

반면, 정부조달 건설서비스 시장개방은 WTO GPA 협상을 통해 추진할 수 있다. 한국은 세계 GDP의 70% 이상을 차지하는 여타 GPA 가입국들과 협조함으로써 중국시장 개방을 위한 큰 협상력을 발휘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한국 뿐만이 아니라 다른 GPA 가입국들에 대해서 중국의 정부조달 시장이 개방됨으로 특혜효과가 많이 떨어질 것이라는 단점이 있다. 그래도 정부조달 시장을 개방하는 가장 유용한 방법이 GPA협상이며, GPA협상을 통해 일단 중국정부조달 시장을 개방한 후, 한·중FTA에서 제시하고 있는 정부조달 분야 추가협상을 통하여 한국이 여타 GPA 가입국들보다 더욱

15) Bradsher (2015)

16) Wheaton (2015)

17) 이 글에서는 정부 보도자료 및 공식자료의 번역에 따라 TPP와 TTIP에서 등장하는 regulatory coherence를 규제수렴으로 번역하지만, regulatory coherence의 개념은 전형적인 규제수렴인 regulatory convergence와 다른 점이 많다. 따라서 regulatory coherence를 규제수렴보다는 규제일관성으로 번역하는 것이 더 바람직할 것이다.

18) APEC (2014) 문단 11

유리한 입장을 취할 수 있도록 노력할 수 있다¹⁹⁾. 또한, GPA 차원 또는 FTA 차원에서 민간협력사업의 시장개방도 추진할 수 있다.

앞에서 언급하였듯이 중국의 GPA 가입협상은 현재 지연되고 있는데 그 이유는 중국이 지방정부와 공기업에 대한 개방에 대해서 상당히 소극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중국의 정부조달 건설서비스 시장을 부분적으로, 그리고 단계적으로 개방시킬 수 있는 방법으로는 일단 RCEP나 한·중 FTA를 통하여 중국의 정부조달 시장 중 중앙정부의 조달만을 먼저 개방시키는 것이다. 한국의 FTA 중 정부조달 시장개방이 포함된 FTA를 보면, 한·칠레 FTA만을 제외하고 여타 FTA에서는 중앙정부의 조달에만 GPA보다 깊은 시장개방을 추진하였고 지방정부나 공기업 차원에서는 GPA의 개방수준을 그대로 유지하여 추가적 개방을 하지 않았다. 비슷한 논리로 WTO보다 유연한 협상이 가능한 FTA에서는 일단 중국의 중앙정부 조달 시장을 개방하고, 지방정부와 공기업 시장개방은 WTO GPA 차원에서 더욱 천천히 논의하는 방법을 택할 가능성이 있다.

4.3 제도와 절차의 투명성 및 입찰 공정성 확보

중국뿐만 아니라 해외 건설시장 진출은 단순한 시장개방 문제뿐만 아니라 투명성과 규제 문제이기도 하다. 중국시장 진출, 특히 정부조달 건설서비스 시장 진출에 있어서는 중국입찰 제도, 특히 지방정부 차원에서 불투명성과 불공정성이 상당히 진출을 어렵게 한다는 지적이 많다.

WTO GPA의 주 목적 중 하나는 정부조달 절차에 있어서 이러한 불투명성을 완화시킨다는 것이다. GPA는 기본적으로 정부조달과 관련된 국내법령과 규제의 공표 및 데이터베이스화를 요구하고, 이러한 정보를 여타 GPA 회원국들의 기업들이 찾기 쉬운 방법으로 공표하기를 의무화하고 있다. 따라서 중국이 GPA에 가입하면서 협정의 대상이 되는 기관들은 조달과 관련되는 법령과 규제를 업체들이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지정된 매체에 공표해야 하며, 새로운 법령과 규제도 같은 매체로 공표해야 한다.

또한, GPA는 정부기관이 프로젝트를 발표하고, 입찰을 공고할 때 따라야 하는 구체적 절차 및 시한을 제시하고 있으므로, 국내외 기업들이 입찰에 대한 정보를 더욱 쉽게 찾고, 입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GPA에서는 입찰공고시 포함되어야 하는 정보, 입찰서류에 포함되어야 하는 정보 및 입찰서류의 접근성, 입찰공고부터 마감까지 부여해야 하는 최소 시한, 제한입찰(수의계약) 사용의 제한 등 입찰절차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위한 조건들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으

며,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를 보장하기 위해서, 만약 정부기관이 절차를 어기면 이를 검토할 수 있는 이의 또는 항의 절차를 도입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으므로 피해를 본 외국업체는 자기의 권리를 지키기가 더욱 쉬워진다. 이러한 절차의 투명성으로 정부리스크, 특히 임의적으로 법이나 규정을 해석하는 지방정부 리스크를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평가한다.

중국도 국내 법과 규제를 정비하는 차원에서는 GPA 가입에 반대하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 많은 국가들은 GPA에 가입할 때, GPA를 빌미로 조달에 관련된 국내법령을 정리하는데, 한국도 GPA 가입시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국가계약법)을 정비하였고 중국도 GPA 가입을 대비하여 2014년에 정부조달법을 정비하였다. 또한 지방정부에 대한 통제력이 약한 중앙정부의 경우, GPA에서는 중앙정부가 GPA 준수를 위한 책임을 지게 되어 있으므로 중앙정부가 정부조달 협정을 통하여 지방정부의 조달절차를 관리할 수도 있는데, 중국도 유사한 방법으로 지방정부를 통제할 것으로 보인다.

4.4 규제수렴을 통하여 한국기업 애로사항 완화

위의 국제협정에서는 협정을 체결한 국가들에게 내국민대우 조건을 요구하고 있다. 내국민대우란 해외업체와 국내업체를 같게 대우해야 한다는 조건이다. 내국민대우는 국제협정을 통한 시장개방의 기본적 조건이지만, 많은 경우에는 내국민대우만으로는 해외업체가 시장을 진출할 때 충분한 도움이 되지 않는 경우가 있다. 즉, 정부가 요구하는 법이나 규제에서 국내기업은 쉽게 조건을 충족할 수 있지만, 해외업체는 충족하기가 어려운 경우, 시장개방이 제한되고 해외업체의 시장진출이 어려울 수가 있는데, 기존 국제협정에서는 이러한 차별적 법과 규제를 제거하기가 상당히 어려울 수 있다. WTO 차원에서 이러한 법이나 규제를 제거하려면 법이나 규제가 공공의 목적은 없고, 주 목적이 외국업체에 차별을 두기 위한 것이라는 점을 WTO 분쟁해결절차에서 입증해야 한다. 따라서 법이나 규제가 공공의 목적이나 필요성을 가지고 있다고 방어할 수 있는 경우, 이러한 법이나 규제가 해외기업에 불리하다고 하여도 제거하기가 어렵다. 예를 들어 중국이 건설업체들에 대해서 허가를 요구하거나 일정한 전문가의 숫자를 유지해야 한다는 규제는 한국업체들에게 큰 진출장벽이 되고 있지만, 안전성을 보호한다는 공공의 목적을 보면 WTO 차원에서 제거하기는 불가능하다.

많은 경우, 이러한 규제는 공공적 목적을 실현하는 데에 필요없이 강한 조건을 요구할 수도 있다. 국내경제 차원에서는 국내기업들이 규제개혁을 통하여 이러한 비효율적인 규제를 정비할 수 있다. 규제개혁에서는 새로운 규제를 도입하기 전에 이 규제가 지킬 사회적 목적을 확인하며, 이에 대한 편익 비용분석을 실시하고, 규제보다 더욱 좋은 대체 정책이 있는지를 검토한다. 그리고 기존 규제를 검토하여 규제의 필요성

19) GPA 국가들보다 더욱 낮은 하한선(threshold)의 설립 등을 추진할 수 있다.

이 계속 존재하는지, 그리고 규제보다 사회적 목적을 실현하는 더욱 좋은 방법이 있는지를 검토하도록 한다. 한국은 1990년대부터 규제개혁을 시도하였으며, 중국을 포함한 아시아 지역 국가들은 APEC을 통하여 수년간 규제개혁의 중요성을 논의하였다.²⁰⁾

1990년대부터는 이러한 국내 규제개혁을 국제화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며, 이러한 규제개혁의 국제화를 규제수렴이라고 한다. 미국이 아시아·태평양 국가들과 협상하고 있는 TPP와 EU와 협상하고 있는 TTIP에는 규제수렴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고 알려져 있다. TPP 차원에서는 규제수렴에 대하여 어떤 내용이 구체적으로 포함될지에 대한 발표가 없지만, TTIP 협상에서는 규제수렴에 대한 EU 정부의 포지션 페이지가 다수 공개된 바 있다. EU 정부의 포지션 페이지를 보면 규제수렴에 포함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²¹⁾.

먼저, 각 국가는 자국에 알맞은 수준과 방법으로 사회적 목적을 설립하고 이에 적합한 규제를 설립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다. 이러한 바탕에서 각 국가는 국경내 무역과 투자장벽을 제거하기 위하여 국가들간 호환적인 규제를 사용하고 서로 유사한 규제를 사용하도록 노력한다. 이러한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서 협상에 참여하는 국가들은 협력기구를 설립하고, 외국업체나 외국정부가 새 규제를 토의하는 단계에서 코멘트를 제출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피드백 절차를 도입하도록 한다. 국내정부는 이러한 코멘트를 받고 고려해야 하지만, 이를 꼭 받아들이는 의무는 없다. 단, 협상의 결과에 따라 코멘트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그 이유를 설명해야 할 의무가 생길 수 있다. 또한 국가들은 서로 규제에 대한 증거와 통계를 모으고 정보교환을 위해 노력하도록 하며, 규제안이 무역과 투자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조사하도록 한다. 그리고 산업분야별로 여러 국가들의 규제가 수렴하도록 노력한다. 이러한 시안들은 국내 규제개혁을 볼 때 흔히 사용되고 있는 절차이며, 여기서 부여하는 권리들은 국내 이해관계자들에게 흔히 주는 권리인데, 규제수렴에서는 이러한 절차와 권리를 국제적으로 확대하는 셈이다.

따라서 규제수렴 절차를 통해서 내국민대우를 넘어 외국업체들에게 차별적인 영향을 가지고 오는 법과 규제의 영향을 완화시킬 수 있다. 특정 규제안이 외국업체에게 특별히 불리하게 적용될 수 있는 경우, 외국업체는 이에 대한 문제점을 국내 규제당국에 지적할 수 있고, 같은 사회적 목적을 수행하지만, 외국업체들에 대한 부담이 상대적으로 적은 대체 방법을 제안할 수 있다.

그러므로 중국에서 영업하고 있는 한국업체는 타당한 국내 목표를 가지고 있는 중국의 법이나 규제를 제거할 수는 없지만, 이러한 법이나 규제가 한국업체에 미치는 차별적인 영향을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수정하도록 제안하거나 같은 사회적 목적을 추진하지만 한국업체에게 덜 불리할 수가 있는 규제 대체방법을 제안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는 것이다.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중국은 APEC을 통하여 수년동안 규제수렴의 개념에 접하였으므로 이러한 규제수렴 조치가 중국에게 새로운 개념은 아니다.

현재 규제수렴의 개념은 TPP와 TPIP에서 논의되고 있으며, 한국은 TPP에 가입할 준비를 하고 있지만, 중국이 TPP에 가입할지는 아직 미지수이다. 현재 중국과 한국이 참여하고 있는 RCEP 협상은 규제수렴이 구체적으로 논의되고 있지 않고 규제수렴에 대한 내용을 추가하기는 다소 늦은 것으로 평가된다. 따라서 중국에 규제수렴 원칙을 적용하고자 한다면, 중국의 TPP 가입을 추진한다면, 아니면 현재 한국과 중국 및 일본이 협상을 하고 있는 한·중·일FTA의 일부로 포함시키도록 노력을 해야 할 것이다. 또 하나의 방법은 TPP와 RCEP 협상이 완료된 후, FTAAP 협상에서 규제수렴에 대한 내용을 포함시키는 것이다. TPP에서는 이미 규제수렴이 포함될 것이므로 FTAAP에도 규제수렴을 포함시키는 것이 비교적 순조로울 것으로 예상되지만, FTAAP 협상이 언제 시작될지가 확실하지 않으므로 상당한 시간이 지날 수 있다는 것이 단점이다.

4.5 기타 방법

앞에서 언급하였지만 세계은행나 ADB에서 용자를 받은 자금으로 건설 프로젝트를 시행하는 경우, 이 프로젝트는 공정한 국제기준으로 입찰 절차를 수행하고, 낙찰자를 선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외국업체들이 상대적으로 쉽게 입찰에 참여할 수 있다. 세계은행과 ADB는 현재 선진국들의 압력에 따라 SOC 등 인프라보다는 보건이나 교육 등 사회적 목적으로 초점을 바꾸고 있지만, AIIB는 인프라 및 건설 프로젝트를 초점으로 두고 있으며 세계은행과 유사한 국제기준으로 입찰 절차를 운영할 것 같으므로 중국의 건설시장, 특히 정부조달 건설시장에 있어서 AIIB가 활발하게 자금을 제공한다면, 한국업체는 AIIB 프로젝트에 참여하여 중국정부의 입찰에 참여하고 공정한 환경에서 경쟁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정부차원에서는 중국이 AIIB의 용자를 적극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리고 한국기업은 이러한 작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장려해야 할 것이다.

5. 결론

이 글은 국제협정을 통한 중국 건설서비스 시장의 시장개

20) 일례로 APEC-OECD Cooperative Initiative on Regulatory Reform이 있으며, 여기에서는 각 APEC 회원국의 규제개혁 노력을 돕기 위한 APEC-OECD Integrated Checklist on Regulatory Reform을 작성, 회원국들에게 배포하였다.

21) European Union (2013)

방도를 검토하고, 한국정부가 국제협상에서 중국 건설서비스 시장을 추가적으로 개방시킬 수 있는 전략을 살펴보았다. 여기서는 세 가지 전략을 추진하기를 제안하였는데, 첫째는 WTO GPA와 FTA를 통하여 시장개방 범위를 넓히도록 한다. 특히 지방정부와 공기업 및 PPP의 정부조달시장 개방을 추진하도록 한다. 둘째, GPA 협상을 통하여 정부조달과 관련된 법과 규제의 투명성 제고와 입찰절차의 투명성 제고를 추진해야 한다. 특히, 지방정부의 입찰절차를 투명화시켜야 한다. 셋째, 한국과 중국이 참여할 향후 FTA에 규제수령에 관련된 협상을 포함하여 외국업체들에게 불리하게 적용되는 규제를 제거시키거나 완화시키도록 한다.

References

- APEC (2014). "2014 Leaders' Declaration" http://www.apec.org/Meeting-Papers/Leaders-Declarations/2014/2014_aelm.aspx.
- Bradsher, K. (2015). "Once concerned, China is quiet about trans-Pacific trade deal", *New York Times*, 2015.4.28. <http://www.nytimes.com/2015/04/29/business/international/once-concerned-china-is-quiet-about-trans-pacific-trade-deal.html>.
- Choi, E. H. and Zou, C. (2008). "A case study of Chinese government procurement market", *Sino-Soviet Affairs* 118, pp. 101-122.
- Choi, J-H and Lee, S. (2010). "Key risks and success factors on the China's public-private partnership water project." *Korean Journal of Construction Engineering and Management*, KICEM, 11(3), pp. 134-143.
- European Chamber of Commerce in China (2011). "Public procurement in China: European business experiences competing for public contracts in China" <https://www.hk24.de/blob/hhikh24/innovation/auftragsberatung/downloads/1155942/887190ce862224d5a32bbf811db107a2/Studie-data.pdf>.
- European Union Chamber of Commerce in China (2014). *European Business in China Position Paper 2014/2015* <http://www.eurochamber.com.cn/documents/confirm/54be973412010/en/pdf/313>.
- European Union (2013). "TTIP: Cross-cutting disciplines and institutional provisions: position paper - Chapter on regulatory coherence" <http://www.iatp.org/documents/european-commissions-initial-position-papers-on-ttip>.
- Kwak, B. S. (2012). "Korea-China FTA and Chinese government procurement market" paper presented at the seminar on *Korea-China FTA Issues and Negotiation Strategy by Areas* hosted by KATIS and KIEP, Nov 26., [http://www.kiep.go.kr/include/filedown.jsp?fname=%B0%FB%BA%B9%BC%B1-%C7%D1%C1%DFFTA%C1%B6%B4%DE%BC%BC%B9%CC%B3%AA\(20121126\).pdf&fpath=news06&NO=185536&FNO=788](http://www.kiep.go.kr/include/filedown.jsp?fname=%B0%FB%BA%B9%BC%B1-%C7%D1%C1%DFFTA%C1%B6%B4%DE%BC%BC%B9%CC%B3%AA(20121126).pdf&fpath=news06&NO=185536&FNO=788).
- Lee, J. S., Min, K. M., Lee, Y. S. and Kim J. J. (2007). "A strategy of improving the domestic construction companies competitiveness in the overseas market." *Proceedings of KICEM Annual Conference 2007*, pp. 674-677.
- Park, H. P., Shin, E. Y., Lee, K. S. (2008). "Improvement plan going into countries of domestic construction companies." *Korean Journal of Construction Engineering and Management*, KICEM, 9(6), pp. 225-234.
- UN(United Nations) (1991). *Provisional Central Product Classifications*, New York, United Nations.
- Wheaton, S. (2015). "Obama: China might join trade deal - eventually" *Politico*, 2015.6.4. <http://www.politico.com/story/2015/06/barack-obama-china-join-trade-deal-tpp-118598>.
- WTO (2002).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Schedule specific commitments" *GATS/SC/135*.

요약 : 이 글은 국제협정을 통한 중국 건설서비스 시장의 시장개방도를 검토하고, 한국정부가 국제협상에서 중국 건설서비스 시장을 추가적으로 개방시킬 수 있는 전략을 살펴본다. 여기서는 세 가지 전략을 추진하기를 제안하였는데, 첫째는 WTO GPA와 FTA를 통하여 시장개방 범위를 넓히도록 한다. 특히 지방정부와 공기업 및 PPP의 정부조달시장 개방을 추진하도록 한다. 둘째, GPA 협상을 통하여 정부조달과 관련된 법과 규제의 투명성 제고와 입찰절차의 투명성 제고를 추진해야 한다. 특히, 지방정부의 입찰절차를 투명화시켜야 한다. 셋째, 한국과 중국이 참여할 향후 FTA에 규제수령에 관련된 협상을 포함하여 외국업체들에게 불리하게 적용되는 규제를 제거시키거나 완화시키도록 한다.

키워드 : 중국건설시장, WTO, FTA
